#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이유

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06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(2007~2010)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가.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

○ 지역주민의 요구도 및 사회관심도, 각종 기초 통계자료 수집분석 실시

○ 지역사회 진단 결과

▷ 인구 지속 감소 추세 및 저출산 고령화 양상

⇒ 모성, 영.유아, 노인보건사업 비중 증대

▷ 의료취약계층 대상 ⇒ 만성질환관리, 전염병관리, 재활보건사업 확대

▷ 민간의료기관과 역할분담 ⇒ 보건소는 건강증진 등 예방중심으로 전환

○ 중점과제 선정 결과

▷ 2004년 부산시민설문조사결과 및 지역현황분석결과 등 반영

▷ 고혈압관리사업, 운동실천사업, 암검진사업 선정

나. 중점과제 수립(3가지 사업)

다. 건강증진사업 계획(금연, 절주, 운동, 영양)

라. 구강보건사업 계획

마. 개별사업계획(13가지 사업)

○ 영.유아 보건사업

○ 모성보건사업

○ 대도시방문보건사업

○ 재활사업

○ 노인보건사업

○ 정신보건사업

○ 전염병예방 및 관리사업

○ 의.약무관리사업
○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
○ 진료,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
○ 보건 및 검사에 관한 사업
○ 공중보건의사 지도 사업
○ 기타 취약계층 지원사업(저소득여성 건강검진, 희귀난치의료비지원, 암관리)

바.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
○ 조직 및 인력
○ 시설, 장비, 예산

**3. 관계법령**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, 동법시행령 제5조

**4. 검토의견**

○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매 4년 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이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입니다.

○ 「지역보건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의료 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,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 목표, 지역 현황과 전망,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.

○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의 목적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아지나 자료관리 측면에 있어 방만하고 다소미흡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. 그러나 이 계획서는 앞으로 4년간 시행하는 보건 분야의 중기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다만, 년도별로 세부적인 사업 단위 실천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저출산 대책 등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좋은 건의내용은 포함하여 시행하고 지역의료보건 계획은 다양하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되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실천 의지가 제고되어야 될 것입니다.